

제 안 설 명 서

【경상북도 북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안)】

영 주 시

경상북도 북부권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

의안
번호 198

제출일자 : '96. 1.
제출자 : 영주시장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폐지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 '95. 7. 1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안동·영주시,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을 권역으로 하는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을 제정하고자 의결을 요청 함.

□ 주요 골자

- 협의회 위원은 안동·영주시장,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수로 함.
- 협의회 회장은 정기회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회의는 정기회의 년2회와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함.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 이 규약 고시와 동시에 영주권행정협의회는 폐지

□ 추진 경과

- '95. 10. 14 규약 제정을 위한 해당시군 실무자 회의 (안동시)
- '95. 10. 17 규약 제정(안) 작성 의견 조회 (안동시 → 해당시군)
- '95. 10. 30 우리시 의견 통보(원안) (영주시 → 안동시)
- '95. 12. 19 규약 제정(안) 확정 통보 (안동시 → 영주시)
- 다른 시군 의회 규약(안) 의결 (영양군 제외)

□ 규약(안) : 불임.

□ 참고자료 : 기존 영주권행정협의회 규약 사본

경상북도 북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안)

제1조 (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 행정 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권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 (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안동·영주시장,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 군수로 하고, 회장은 정기회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 반기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요청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 일정은 회장이 정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상정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나누어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을 대리 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기획담당관(실장)과 협의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 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할 수 있다.

-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의 기획실장(담당관)으로 한다.

- 제9조 (회의록의 작성) ① 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보관한다.
- ②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공동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광역개발사업 등 공동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 결정하여 부담한다.

- 제11조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12조 (결의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조정요청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와 동시에 안동·영주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은 폐지한다.

영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영주시와 봉화군간에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합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주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위치) 협의회는 영주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영주시, 봉화군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2(조직) ①협의회의 위원은 영주시장, 봉화군수로 하고 회장은 영주시장으로 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영주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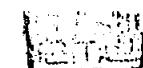
④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부군수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에 관한 사항
4.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2(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2월과 3월사이, 8월과 9월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영주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영주시 기획계장과 봉화군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시, 군의회 의결 또는 의견을 들어 회의 개최 10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제5조의2(배석위원) ① 협의회에 배석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배석위원은 상정협의안건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 담당관, 실과소장으로 한다.

③ 배석위원은 토의에 참여하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의3(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영주시, 봉화군의회 의원 및 관련공공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의4(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영주시 기획담당관과 봉화군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실과소장 및 주민대표가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영주시 기획담당관으로 하되, 서기는 제4조의3 제②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위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의 작성) ① 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①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 개발사업 실시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결의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해당 시, 군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요청 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회장이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년 6 월

영 주 시



봉 화 군

